

# 경기평택항만공사 공무직(보안) 직원 채용공고

## 1.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

□ 채용인원 : 총 1명

채용분야	채용인원	채용방법	근무지*
공무직/보안	1명	서류 - 인적성 - 면접	화성

\* 공사 사업장은 경기도 평택, 화성, 안산, 시흥에 있으므로 부서 배치에 따라 근무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□ 채용분야별 직무내용

채용분야	직무내용
공무직/보안	○ 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주요 시설물 순찰 및 보안점검·관리, 출입자 통제·관리, 안전사고 발생 예방, 보안통제시설 시스템 운용, 고객 안내업무

## 2. 응시자격(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)

□ 공통 응시자격

가.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

나.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
다. 공사 인사규정 제14조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### <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 >

1.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장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□ 채용분야별 응시자격

채용분야	자격요건
공무직/보안	○ 별도 자격요건 없음

□ 시험가산특전

가점종류	가점비율(총점 100점 기준)	적용단계	비 고
취업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련 법률에 따라 5~10%</li> <li>1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</li> <li>2.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</li> <li>3. 5·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</li> <li>4.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</li> <li>5. 고엽제후유증등환자지원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</li> <li>6. 특수임무유공자에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</li> <li>7. 「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</li> </ul>	서류전형 면접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(분야)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(분야) 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관계 법령 및 공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함.</li> </ul>
사회적 약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 : 3%</li> <li>- 다문화가족 : 3%</li> <li>- 북한이탈주민 : 3%</li> </ul>	서류전형 면접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 :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」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로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</li> <li>- 다문화가족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해당자 및 그 가족</li> <li>- 북한이탈주민 : 「북한이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해당자</li> <li>- 서류전형, 면접전형 만점의 60%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</li> </ul>

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, 사회적 약자 가점 중 본인에게 유리한 가점(높은 가점) 하나만 인정

### 3.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

#### □ 원서접수

- 가. 공고기간 : 2026. 4. 15.(수) ~ 2026. 4. 27.(월)
- 나. 접수기간 : 2026. 4. 21.(화) ~ 2026. 4. 27.(월) (~17:00까지)
- 다. 지원방법 : 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(<https://gppc.recruiter.co.kr>)에서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

#### □ 제출서류 ※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(또는 삭제) 처리된 것으로 제출
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등 <전산기재>
- 원서접수 시 채용 홈페이지에 스캔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
  - 1)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  - 2)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  - 3)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  - 4) 장애인 증명서(또는 복지카드)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  - 5) 다문화가족 증명서류(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, 해당자에 한함)
  - 6)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### 4. 보수 및 근무조건

- 가. 보수(월 급여) : 월 2,747,700원
  - ※ 초과근무 등 기타 제수당은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
- 나. 근무시간 : 3조2교대제(4근2휴)
  - (주간근무) 08시 ~ 20시, (휴게) 12시 ~ 13시, 17시 ~ 18시
  - (야간근무) 20시 ~ 08시, (휴게) 01시 ~ 04시
- 다. 근무지 :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477(제부마리나)
  - ※ 공사 사업장은 경기도 평택, 화성, 안산, 시흥에 있으므로 부서 배치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라. 복리후생 : 종합 건강검진 지원,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 등

### 5. 전형절차 및 일정

#### □ 전형절차 : 서류 → 온라인 인적성검사(AI역량검사) → 면접

##### 가. 서류전형

- 심사내용 : 기본자격(응시자격, 구비서류), 직무수행계획서(60%), 자기소개서(40%) 등 종합평가
- 합격자 결정 :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결정(동점자 모두 선발), 평가위원 평균 평가점수가 최종 평점의 60%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

## 나. 온라인 인적성검사(AI역량검사)

- 대상자 : 서류전형 합격자
-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, 검사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로만 활용
  - ※ 내장형 카메라가 있는 노트북 또는 웹캠 준비 필요

## 다. 면접전형

- 면접방법 : 서류전형 합격자 및 온라인 인적성검사 응시자 대상으로 블라인드 면접 실시
- 심사내용 : 직무적합성(50%), 인성(50%)
  - 직무적합성 : 직무수행능력, 분석적사고, 프레젠테이션능력, 창의적사고, 의사소통능력, 팀워크/협동
  - 인성 : 조직적응력, 윤리의식/정신자세, 도전정신
- 합격자 결정 :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 결정
  - ※ 평가위원 평균 평가점수가 최종 평점의 60%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
  - ※ 면접평가점수 동점자(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)가 발생할 경우 1)취업지원대상자 2)사회적 약자 가점 적용 대상자 3)제1차시험(서류전형)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## □ 전형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채용공고(원서접수)	4. 15.(수) ~ 4. 27.(월)	원서접수(4. 21. ~ 4. 27. 17:00)
서류전형	5월 중	채용 홈페이지
온라인 인적성검사	5월 중	채용 홈페이지
면접전형	6월 중	장소 등 세부사항 추후 공지
최종합격자 발표	6월 중	채용 홈페이지
임용	7월 중	-

※ 전형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

## □ 예비합격자 선정
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6개월 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합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3명(대상자가 2명 이내일 경우 대상자 전원)을 예비합격자로 하여 예비합격자 중 고순위자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

## □ 이의신청 안내

- 가. 접수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익일까지
- 나. 접수방법 : 이의신청서 양식 전자우편(withu@gppc.or.kr) 접수
- 다. 이의신청 처리대상 :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

<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>

-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,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
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출제기관)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
## 6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자격미비자의 응시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,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나. 응시자는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감독관의 지시 및 안내사항 등에 따라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다.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, 학교명,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
※ 단,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된 경우 블라인드 처리 후 평가진행
- 라.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, 채용 후 부정 사실이 발견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
- 마.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하며,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,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, 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,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바. 각 전형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홈페이지 등을 수시 확인하기 바람
- 사.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- 아. 임용 후 6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용하며,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자. 우리 공사는 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, 응시자 중 동법 제 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‘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’ 또는 ‘취업승인심사’를 통해 ‘취업가능’ 또는 ‘취업승인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차.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카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- 타.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(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)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파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응시자(임용된 자는 제외)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별표 제3호 서식)」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(withu@gppc.or.kr) 하고 기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
- 하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3조의7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,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 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,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거. 기타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담당자(☎031-686-0621)에게 문의바람. 단,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